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31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은 중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항공기 항적, 비행계획서 등은 공공데이터로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 공유 신청 등에 따른 연계시 시설 보호 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고, 이를 심사하는 의사결정기구도 객관화하여 기능을 개편할 필요에 따라 행정규칙(고시)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국제표준으로 지정된 데이터 통합분배 시스템(SWIM) 플랫폼에 의하여 수집되고 공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도화
- 나. 전국 각 개소별 항행시스템의 필요정보를 최단 근거리에서 하나의 통합분배 시스템에 의한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 다. 국가정보원 사이버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 및 사회적 부가

서비스 등 활용 목적에 따른 데이터 공급\*방안 마련

\* (민간) 방화벽 등 보안장비 설치, 軍 항공기 레이더 항적 제공 제외 등

라.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등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검토협의회”를 “항행위성정책위원회”로 기능을 개편하고 절차를 간소화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메일(cnscodi@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전화번호: 044-201-4357, FAX:044-201-5637, 메일 : cnscodi@korea.kr)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